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0가단2533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증(담당변호사 안병준)

피고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2022. 10. 4.

판결 선고2022. 11. 1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6. 체결된 증여계약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11. 16. 접수 제4149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9. 1. 3. 접수 제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C이 원고에 대하여 정산금 등 채무¹⁾를 부담하던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²⁾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강화석

별지

1) ① 서울고등법원 2014. 9. 17. 선고 2012나93802 판결(상고기각, 확정)에 따른 채무: 2014. 6. 26.부터 강원 횡성군 D 지상 모텔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C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2,912,000원으로 계산한 돈

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32584, 32591 판결(상고기각, 확정)에 따른 채무: 199,589,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2022. 6. 1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같은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위 채권들 중 68,263,615원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게 되는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사해행위 전인 2016. 10. 25. 신용보증기금 앞으로 채권최고액 82,56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사해행위 후인 2018. 11. 20. 말소되었다. 그러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사해행위 전인 2018. 9. 19. 이미 모두 변제되었고 다만 그 말소등기가 사해행위 후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할 사안은 아니다.